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162

발의연월일: 2024. 12. 31.

발 의 자:김예지・김상욱・서미화

김소희 • 이종배 • 정성국

박정하・박덕흠・최수진

최형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등이 진정을 한 경우 또는 직권에 따른 결정으로 진정 조사를 할 수 있고, 그 조사의 대상은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조사의 대상에 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사회적 기본 권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를 침해당한 자는 차별행위 또는 자유 권 침해 등의 우회적 방법으로 진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 됨. 인권의 중요성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였을 때 헌법 제10조에서 제22조까지 자유권적 성격의 기본권은 물론,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환경권 등의 사회적 기본권, 그 외 정치적 기 본권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전체 기본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는 지적이 있음.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조사 대상을 헌법에 보장된 전체 기본 권으로 넓혀 인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30조제1항). 법률 제 호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1항제1호 중 "「대한민국헌법」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"를 "「대한민국헌법」에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0조(위원회의 조사대상) ① 다	제30조(위원회의 조사대상) ①		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		
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			
행위를 당한 사람(이하 "피해			
자"라 한다) 또는 그 사실을			
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			
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			
있다.	–.		
1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	1		
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조,			
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와 그			
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			
된 각급 학교, 「공직자윤리			
법」 제3조의2제1항에 따른			
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・보			
호시설의 업무 수행(국회의			
입법 및 법원·헌법재판소의			
재판은 제외한다)과 관련하여			
「대한민국헌법」 제10조부터	헌법」에서		
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			
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			
행위를 당한 경우		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		

② ~ ④ (생 략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